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가단1406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근수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3/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20. 5. 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6,333,333원의 범위 내에서,
나. 2/9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2020. 5. 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7,555,555원 범위 내에서,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D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862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은 122,901,400원 및 그 중 121,466,700원에 대하여는 2009. 7. 18.부터, 1,434,7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24.부터 각 2010. 12.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2. 11. 2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C, D은 연대하여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3.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2. 11. 2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16. 확정되었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5. 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 자인 F, 피고, D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는 2020.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당시 C, D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마. 피고는 2020. 9. 21.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천만 원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G는 2021. 7. 8. H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8천만 원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2022. 6. 18.기준 시가는 7,9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 대구 서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I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J의 시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C,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3/9,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위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 D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1)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당시 시가가 7,900만 원인 사실은 추인되고,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9, 2/9 지분의 각 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소액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해야 할 금액은 위 부동산 지분 가액 상당인 합계 43,888,888원($7,900\text{만 원} \times 5/9(3/9 + 2/9)$)이다2).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26,333,333원($7,900\text{만 원} \times 3/9$) 범위 내에서, 2/9 지분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17,555,555원($7,900\text{만 원} \times 2/9$) 범위내에서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3,888,888원($26,333,333\text{원} + 17,555,555\text{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판사 김범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 주택(9세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광역시 서구 대 18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9.7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89분의 21.31

- 끝 -

1) 원고는 2020. 5. 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8천만 원으로 기재하였지만, G로부터 8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4천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액배상금액은 실제 매매대금 4천만 원 중 5/9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에게 매매대금 중 4천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는 G가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8천만 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4천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